

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)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2차)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내 구거 내 『국유재산법』 제30조 및 『농어촌정비법』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하여 『국유재산법』 제38조 및 『농어촌정비법』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정 읍 시 장



1. 공 고 명 : 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)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2차)
2. 공고기간 : 2026. 4. 30. ~ 2026. 5. 15.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법적근거 :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, 제38조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, 제128조
5. 공시송달 내역 : 붙임
6. 공고내용
 -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,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 -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.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(☎063-539-58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구거부지 내 불법점용 세부내역

연 번	소재지	무단점유 현황			비고
	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
1	정읍시 삼산동 927	미상	미상	물건적치 2개	
2	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1211-1	미상	미상	물건적치 2개	
3	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44-19	미상	미상	전신주 1건	